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대흥교회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11번길 46  
☎교회사무실 042-221-0094(010-4411-9861)

문서번호 : 대흥 2026- 9호

발신일자 : 2026. 6. 8.

수 신 : 대흥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 목: 이주 및 명도 관련 강제집행 예고에 대한 반박 및 교회의 입장 통보의 건

1. 귀 조합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은 공문을 통해 본 교회의 철거 미논의로 인해 사업지구 내 선면 철거가 중단되어 매월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철거 및 손해배상청구로 교회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본 교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아울러 대전광역시 중구청의 철서관련 유선약인에 비주어 귀 조합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을 동지하여 드립니다.

3. 본 교회가 귀 조합의 사업 제안에 동의를 한 것은 “본 교회 소유의 교육선교관을 철거하고 교육선교관 부지를 조합 사업부지에 편입하는 대신, 새로운 교육선교관을 신축할 대토를 교부받는 것”을 대전제로 하였음은 귀 조합이나 대전광역시 중구청 또한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확인한 결과 귀 조합이 대토로 제공한 토지에서 실제로는 '건축이 법적·행정적으로 금지된 토지'임이 드러났고, 그에 따라 교회에서는 당초 예견되었던 교육선교관 신축을 대토에서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교회의 성직자들과 교인들은 귀 조합과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교회를 기망하고 더 나아가 교권을 핍박한 것은 아닌가 하는 분개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귀 조합에서는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교회의 소유가 될 대토에서 30m 이격거리 원칙을 완화하여 교회경계에서 불과 3m만 이격하여 22층 아파트를 신축을 하기로 대전광역시 중구청과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본교회의 소유지인 대토에 나무 식재를 하기로 하였음을 교회에서는 시행지침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귀 조합이 당초 교육선교관 부지를 대체하여 교회에게 지급할 대토에서는 양자간에 합의

된 전제 조건인 “교육선교관 신축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전 동의 없이 나무까지 식재하는 인가를 득하여 토지이용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귀 조합의 기만행위에 대해 본 교회의 성직자들과 교인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방치한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사정이 이와 같이 매우 급박함에도 귀 조합에서는 당초 예견하였던 교회 교육선교관 신축을 위한 타당한 조치에 관한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회가 근거 없이 교육선교관 철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의 명예에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거침 없이 하고 있는바, 이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당초와 달리 새로운 요구를 하거나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견한 것처럼 “교육선교관 철거에 발 맞추어 대토에서 교육선교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고, 조합의 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인접토지와 명확한 기능분리는 공동주택 사업주체인 조합의 토지에서 확보하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요구에 귀 조합은 마땅히 응해야 하며, 이러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회를 험담하는 식의 겁박에 대해서는 교회는 교회법적 및 세속법적인 엄정 대처를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6. 6. 8.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대흥교회 담임목사

권신재

